

# 생활관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안내

## [추가 공지사항]

1. 입사 전 음성확인서(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) 제출 후 입사 가능
2. 생활관 거주 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, 자가격리자,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: 당일 본가 귀가 원칙

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안내서(제5판) ‘재택치료 예외 대상자 중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(세어하우스)’ 에 기숙사가 포함됨)

생활관은 다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,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입사 시 ‘음성확인제’ 를 도입하였습니다.

해당 증명서(확인서) 미비 시 **입사가 불가능**하오니, 사전에 **준비**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제출서류: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PCR검사 대체 가능)

대상자	제출서류	제출장소
생활관생 전체	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(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)	입사 시 <b>현장 제출</b>

## 2. 음성확인제

가. **신속항원검사** 또는 **PCR검사** 중 선택

나. **신속항원검사**

- 02.25.(금)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(입사 시 현장제출)
- 유효기간: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(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)
- **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허용**

다. **PCR 검사**

- 2.26.(토) 입사자 기준: 02.23.(수) ~ 02.24.(목)자에 검사 실시한 결과만 인정
- 유효기간: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(PCR)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

## 3.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(완치자)

- 격리해제확인서를 입사 시 **현장 제출**(유효기간: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)

※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 변경 시 생활관 코로나19 음성확인제 변경 가능

2022.02.16.

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장

□ **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**

대상자	발급방법(시행일시)	유효기간	확인방식
미접종 완치자	1) 종이 증명서 (격리해제확인서)	180일 (6개월)	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
접종완료 완치자	2) 전자 증명서	-	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코로나19 음성 확인자	1)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) 종이 증명서 (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)	1일	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
	2) PCR 음성 결과통지서 2-1) 문자 통보(~'22.2월말) 2-2) 종이 증명서 (PCR 음성 확인서) 2-3) 전자 증명서	2일	1-1) 문자 통지서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예외자 (의학적 사유)	1) 종이 증명서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	없음	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
기타 건강상 이유	2) 전자 증명서	180일 (6개월)	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
\*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만 즉시 발급 가능

\*\*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